

HAPPY700 상상놀이터 변경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37
------------	-----

제안연월일 : 2025. 5. .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건물 증축 및 놀이기구 변경에 따른 기존 위탁협약에 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실내놀이터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지역 연계 활성화에 기여한 기존 위탁법인에 잔여 위탁기간동안 변경 위탁추진을 위해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HAPPY700 상상놀이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제53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추진 필요성

- 놀이터 이용 대상자에게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미세먼지와 눈·비 등 기후변화에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권리 및 발달 권리 보장
- 기존에 운영 관리하며 경험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변경 위탁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위탁범위 : HAPPY700 상상놀이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사무내용
 -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 관리 및 운영
 - 이용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수행인력 : 6명 (정규직 3, 시간제 3,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
- 시설규모 : 연면적 603m^2 (기존 162m^2 +증축 441.62m^2)
- 놀이기구
 - 기존(162m^2) : 유아챌린지, 모션슬라이딩, 볼풀장, 주방마켓놀이, 블록놀이, 낚시놀이, 트램펄린
 - 증축(441.62m^2) : 뱅글, 플레이짐, 파라볼릭, 클라이밍, 트램펄린, 튜브슬라이드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마. 민간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 (5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법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대표 진광호)
- 선정방법 : 기존 위탁법인 잔여위탁기간 변경 위탁

○ 선정사유

- HAPPY700 상상놀이터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신청법인·단체의 공신력, 지역사회 기여도 및 연계 가능성
- 아동복지사업 관련 수행실적, 책임성 및 의지 등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위탁금 예산지원 : 166,000천원(준비)

- 인건비(6명) 149,000, 운영비(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17,000

아. 변경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위탁의 필요성

- HAPPY700상상놀이터는 정적·동적 놀이공간 구분으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성장 발달에 적합한 놀이로 상상력·창의력 증진에 기여하고 놀이공간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놀이공간을 마련하고자 운영되는 시설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위탁이 적정함.

○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HAPPY700상상놀이터는 공공형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편리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지역사회와 원활하게 연계되고 전문성과 자율성이 공존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적합함.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어린이실내놀이터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상상력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돋고, 놀이기구 등을 통한 안전하고 다양한 신체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놀이공간이 부족한 농어촌에 적합한 공공형 시설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이 적정함.

○ 기타 검토사항

- 시설 운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지도 점검 실시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자.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추진현황(경과) 및 향후계획

- 2023. 1.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예산 확보
- 2023. 11. ~ 2024. 8.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9. : 놀이기구 설치 완료
- 2024. 12. :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 2025. 1. 22. ~ 5. 6. : 시범운영
- 2025. 5. ~ 6. : 내외부 디자인 공사 실시
- 2025. 7.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정식 개관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제53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계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2023. 7. 18.>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3. 3. 23., 2014. 6. 3.,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20. 12. 22.>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 12. 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 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 6의2. “정기시설검사” 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 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 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 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놀이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